

교훈 : 성실 	<h1>가 정 통 신 문</h1>	제 2023 - 82 호
		담당 : 생활교육부
<h2>2023학년도 학생의 인권에 관한 보호자 교육</h2>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07

학부모님께.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보호자 교육 자료를 안내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업과 인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조)

2.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정·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4.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8조)

5.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안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제도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3	031-820-0634	031-820-063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https://more.goe.go.kr/shr/index.do)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구제신청 등의 청원권 행사는 비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3. 5. 19.

시흥가온중학교장[직인생략]